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5,001,139,000	150,034,170
일 반 회 계	4,311,600,000	129,348,000
특 별 회 계	689,539,000	20,686,170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361,784,000	10,853,520
기 타 특 별 회 계	327,755,000	9,832,650
· 소 방 안 전 특 별 회 계	68,000,000	2,040,000
· 지 역 자 원 시 설 세 특 별 회 계	2,260,000	67,800
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237,319,000	7,119,570
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	20,176,000	605,28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,284,214천원으로 하고  
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5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